

건설기계 점검·정비내역서

건설기계 소유자	등록번호		건설기계명 (기종)		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	km hr
	소유자		주 소	(전화번호:)		
	등록연월일		점검·정비의뢰일자			
건설기계 정비업자	사업자등록번호		건설기계정비업 등록번호			
	업체명(대표자)	()	주 소	(전화번호:)		
	점검·정비완료일자		출고일자	정비책임자	(서명 또는 인)	
점검·정비내역			추가정비동의 여부		[]동의 []부동의	
작업 내용			부품			
			구분	수량	단가	계
						공임
소 계			부 가 가 치 세		합 계	
<p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점검·정비내역서를 발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작성자 (서명 또는 인)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 </p>						
<p>1.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하여야 합니다(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0조의5제1항제2호).</p> <p>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(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)의 건설기계: 점검·정비일부터 90일 이내(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)</p> <p>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(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)의 건설기계: 점검·정비일부터 60일 이내(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)</p> <p>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(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)의 건설기계: 점검·정비일부터 30일 이내(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백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)</p> <p>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,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.</p> <p>가. 건설기계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(제재조품 포함): A 나.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부품: B 다. 중고품(중고재생품 포함): C 라. 수입부품: F</p> <p>※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</p>						